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6월 11일, 박수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6.)

상정, 축조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현의원)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 현행법령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¹⁾하여야 하고,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등을 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함.²⁾

1)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그런데 개방 체육시설의 예약 관련 규정이 없어 일반 주민이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체육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불균등한 사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개방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수립·공표하고, 개방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8조제3항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각 조례³⁾를 통해 사용시간, 우선순위, 예약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현황 공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별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는 것과 별개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새로 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①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 확보 취지에서 유사한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을 병합하여 제3항으로 신설하고, ②현재 체육시설 이용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문구(제3항)는 삭제하며, ③「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부분(제4항 후단)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⁴⁾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정하)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의 정보공개 대상을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 시간 등”에서 “예약현황 등”으로 수정 의결함.

3)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 <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생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기준(이하 “체육시설 이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③ ----- ----- ----- ----- 예약절차 등 체육시설 ----- -----수립·공표하여야 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이용기준에 따라 개방한 체육시설의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개방·이용 및 공개의 방식 등에 -----.	④ -----제3항까지에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이유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의 정보공개 대상을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에서 “예약 현황 등”으로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함(안 제8조제3항).

나. 개방한 체육시설의 정보공개 대상을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에서 “예약 현황 등”으로 수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8조제3항).

다. 안 제8조제3항의 자구 수정을 반영하여 적용례의 조 제목 중 “이용정보의 공개”를 “예약 현황 등의 공개”로 수정함(안 부칙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 기준(이하 “체육시설 이용기준”이라 한다)”를 “체육시설 이용 기준”으로, “한다.”를 “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공개의 방식”을 “공개”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이용 정보”를 “예약현황 등”으로 하고, 안 부칙 같은 조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 ② (생략) <u><신설></u>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 기준(이하 “체육시설 이용기준”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 기관의 장은 체육시설 이용기준에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 ----- ----- -----체 육시설 이용 기준----- ----- 하고, 개방한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u><삭제></u>
<u><신설></u>		

③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체육시설의 <u>개방 및 이용</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u>따라 개방한 체육시설의 예약 사항, 이용자, 이용시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u>----- ----<u>개방·이용 및 공개의 방식 등에</u>----- ----- -----. 부 칙 제2조(체육시설 <u>이용 정보</u>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u>제8조 제4항</u>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의 이용을	④ -----<u>제3항</u>----- ----- ----- <u>공개</u>----- ----- -----. 부 칙 제2조(체육시설 <u>예약 현황</u>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u>제8조 제3항</u>----- ----- ----- -----
---	--	--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를 “개방·이용 및 공개 등에”로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 시간, 이용방법, 이용 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예약 현황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 주민이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우선순위 및 예약절차 등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여야 하고, 예약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u> <u>-----개방·이용 및 공개</u> <u>등에-----</u> <u>-----.</u>